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신 기관의장

람

제1762회 2023. 7. 4.(화)

차 례

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——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1453호

#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. 7. 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-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정기회의 개최 횟수 개정(안 제7조제1항)

## 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 건강증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718-0503, 팩스 032-718-0792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정기회의 개최 횟수 개정(안 제7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가정보육과와 합의
- 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기별”을 “연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<u>분기별</u>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조(회의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연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의견제출서

1. 자치법규명		
2.	성명(단체명/대표자)	
	주 소	
3. 의견		
4. 기타		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 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- 비 고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 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